

# 변경대비표

## [신탁계약서]

1. 집합투자기구 : NH-Amundi Allset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[주식]
2. 효력발생일 : 2018 년 5 월 28 일
3. 정정사유
  -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변경
  -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한도 변경

### 4. 정정내역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전  | 변경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4-2조(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) | ①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 현재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<u>아문디 싱가포르(AMUNDI Singapore)</u> 이다.  | ①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 현재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<u>Fullerton Fund Management Company Ltd.</u> 이다.  |
| 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               |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~4.(생략)</p> <p>5.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5%이하(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95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집합투자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95이상이 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자산에 운용되는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이하)로 한다. 다만,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(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.)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u></p> |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~4.(현행과 동일)</p> <p>5.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40% 이하로 한다.</u></p> |

# 변경대비표

## 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: NH-Amundi Allset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(주식)
2. 효력발생일 : 2018년 5월 28일
3. 정정사유
  -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변경
  -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한도 변경

### 4. 정정내역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전  | 변경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요약자료<br>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<br>(1) 투자전략 | 2. 투자전략<br>- 세계적인 운용사인 Amundi Singapore를 해외 위탁집합투자업자로 하여 글로벌 리서치 및 해외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.<br>3. 운용전문인력<br>(2)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<br>Tan Jee Toon (Amundi Singapore)  | 2. 투자전략<br>- 해외 주식에 대한 운용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'Fullerton Fund Management Company Ltd.' 에서 수행합니다.<br>3. 운용전문인력<br>(2)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<br>Choo Jee Meng (Fullerton Fund Management)<br>Michelle Sim (Fullerton Fund Management) |
| 제2부. 4. 집합투자업자                       | <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변경><br>Amundi Singapore  | Fullerton Fund Management Company Ltd.   |
| 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                       | (2)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<br>Tan Jee Toon (Amundi Singapore)   | (2)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<br>Choo Jee Meng (Fullerton Fund Management)<br>Michelle Sim (Fullerton Fund Management)   |
| 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               | ⑥ 집합투자증권 등<br>투자한도: 5%이하<br>투자대상조건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제 189 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제 196 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(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서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.<br>(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며,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) | ⑥ 집합투자증권 등<br>투자한도: 40%이하<br>투자대상조건: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  |
| 제2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             | - 세계적인 운용사인 Amundi Singapore를 해외 위탁집합투자업자로 하여 글로벌 리서치 및 해  | - 해외 주식에 대한 운용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'Fullerton Fund Management Company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방침 및 수익구조<br>(1) 운용전략               | 외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.                  | Ltd. 에서 수행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4부. 2. 운용관련<br>업무 수탁회사 등에<br>관한 사항 | <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변경><br>Amundi Singapore | Fullerton Fund Management Company Ltd. |

# 변경대비표

## [간이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: NH-Amundi Allset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[주식]
2. 효력발생일 : 2018 년 5 월 28 일
3. 정정사유
  -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변경

### 4. 정정내역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전   | 변경후  |
|--|---|--|
| 요약자료<br>Ⅱ. 집합투자기구의<br>투자정보<br>(1) 투자전략 | 2. 투자전략<br><내용 추가><br><br>3. 운용전문인력<br>(2)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<br>Tan Jee Toon (Amundi Singapore) | 2. 투자전략<br>- 해외 주식에 대한 운용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'Fullerton Fund Management Company Ltd.' 에서 수행합니다.<br>3. 운용전문인력<br>(2)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<br>Choo Jee Meng (Fullerton Fund Management)<br>Michelle Sim (Fullerton Fund Management) |